

2026 . 9 . 23 .

수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의원

하 서 영



(인)

(발의자 : 1 명)

(찬성자 : 8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붙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7 |
|----------|----|

발의연월일 : 2026. 09. 23.

발 의 자 : 하 서 영 의원(1명)

찬 성 자 : 박은경·정지광·김형우·

김안숙·박미정·오지환·

정민우·조희욱의원(총8명)

### 1.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명칭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체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 법률명을 현행화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시 자문위원회를 현행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 다. 학교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 연수 및 어린이집 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명칭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현행화함(안 제7조)
- 마. 환경교육센터 재정지원과 관련한 인용조문을 현행법상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4조 및 제25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 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 집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원·담당직원·봉사자”를 “교원·보육교  
직원·담당직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학교 및 어린이집의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  
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  
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  
을 “환경교육사 등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환경교육  
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제2  
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변경사유)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b>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b> 조례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br>조례 제명 현행화                       |
|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이 조례는 「 <b>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b> 」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br>인용 법률명 현행화                       |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b>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b>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br>인용 법률명 현행화                       |
| 제5조(위원회의 자문)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b>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b> 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개정<br>위원회 운영체계 현행화          |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구청장은 <b>학교 및 어린이집에서</b> 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br>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하고<br>제목 및 지원범위를 확대 |
| <신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b>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b>                                                                                                      |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br>근거 신설                            |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 어린이집 관련 조항<br>신설에 따른 호 번호<br>조정                  |

|                                                                                                                  |                                                                                                                       |                                        |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 어린이집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호 번호 조정              |
| 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 4. 환경교육 담당 교원· <b>보육교직원</b> ·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 어린이집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교육·연수 대상에 추가   |
|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5. <b>학교 및 어린이집의</b>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 확대 |
|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 호 번호 조정                                |
|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 호 번호 조정                                |
| 7.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 8.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 호 번호 조정                                |
|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 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 호 번호 조정                                |
| 9.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                                                                                                  | 10.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                                                                                                      | 호 번호 조정                                |
|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11. 그 밖에 <b>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b>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환경교육 지원범위 확대 및 호 번호 조정     |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1. ·2. (생략)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1. ·2. (현행과 같음) 3. <b>환경교육사 등</b>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명칭 현행화                 |
|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24조에 따른 <b>국가 환경교육센터 및 제25조에 따른 지역 환경교육센터</b>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명칭 및 인용조문 현행화        |

**[붙임]**

##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01.)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4조 및 제25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

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2023. 12. 26., 2025. 10. 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환경교육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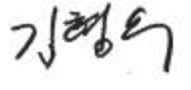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시행 2024.5.17.)

**제26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5. 17.>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5.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서영의원 발의) 서명부

| 발 의 자 |                                                                                   | 찬 성 자 |                                                                                       |
|-------|-----------------------------------------------------------------------------------|-------|---------------------------------------------------------------------------------------|
| 의 원 명 | 서명.날인                                                                             | 의 원 명 | 서명.날인                                                                                 |
| 하 서 영 |  | 박은경   |    |
|       |                                                                                   | 정지영   |    |
|       |                                                                                   | 김형우   |   |
|       |                                                                                   | 김 안숙  |  |
|       |                                                                                   | 박 미령  |  |
|       |                                                                                   | 오 지 환 |  |
|       |                                                                                   | 정민우   |  |
|       |                                                                                   | 조 희 옥 |  |
|       |                                                                                   |       |                                                                                       |